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호
----------	------------

제출년월일 : 2006. 2. 20.
제출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수정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조문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1조(목적)의 조문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u>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u> 고등 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u>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u> 고등 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